

「평창군 시설관리공단」 행정재산 무상사용 동의안

의안 번호	1
----------	---

제안연월일 : 2026. 6. .
제안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- 평창군 시설관리공단은 현재 종합운동장 내 2개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,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초 설립 시부터 사용하던 주 사무소에 대해 무상사용 기간을 연장하고자 함.
- 이에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3호에 따라 평창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위 치 : 평창읍 종부로 69-27(종부리 596-3), 평창종합운동장
나. 사용기관 : 평창군 시설관리공단
다. 사용목적 :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활용
라. 사용기간 : 2026. 7. ~ 2031. 6. (5년간)
마. 재산내역

재산의 표시					비 고
소재지	지번	구분	지목/구조	면적(m ²)	
평창읍 종부리	596-3	건물	철근콘크리트	124.43	현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(선수대기실 2)

3. 위치도 및 현장사진

< 위 치 도 >



< 현장사진 >



관계법령 발췌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제24조(사용료의 감면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~ 3. 생략
4.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7조 (사용료 감면)

제17조(사용료 감면)

- ① ~④ 생략
-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“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 - 1 ~ 2의2. 생략
 3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
 4. ~ 5. 생략